

※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KT 기업서비스 신청서(신규/변경)’ 서류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선택	품목	속도/회선수	요금청구
데이터	○디지털 ○아날로그 (선식:○2 ○4) 방식(○TDM ○EoS ○이더넷 ○기타)	속도 ()bps 회선수()회선	○당월 ○익월
서비스신청	•계약기간()년 (. . . ~ . . .) •총 계약요금 [원], 월[원] (부가세 별도) ※ (계약조건 유지 의무)계약의 임의 중도해지 or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아래와 같은 위약금 발생 - 위약금 산식: 계약요금 x 계약잔여 개월 수 x ()% ※ (비밀 유지 의무) 본 청약서의 kt의 접수승낙과 동시에 계약체결로 인정되며, 계약내용에 대해 계약기간 및 계약 종료 후 3년 동안 비밀을 유지 하겠습니다. ※ 계약만료 1개월 전 변경/해지 등 별도의 의사 표시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에 동의합니다. ※ 추가합의사항()		
	이용 계약	신청자: (서명/직인)	

설 치 정 보	구분	상위국	하위국
	상호		
	주소		
	종단장치	○ 고객설치 ○ KT임대	○ 고객설치 ○ KT임대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	성명 : 전화번호 :
	유지보수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 회사명 :	성명 : 전화번호 : 회사명 :

☐ 추가설치

※ 다량회선 설치 시 별지(다량회선 작성양식) 작성

	구분	상위국	하위국	
1	상호			희망회선번호 :
	주소			규격(속도) : bps
				장비임대 : 상위국(), 하위국()
유지보수담당자	회사명/성명 : 전화번호 :	회사명/성명 : 전화번호 :	개통희망일 : 20 . . .	
2	상호			희망회선번호 :
	주소			규격(속도) : bps
				장비임대 : 상위국(), 하위국()
유지보수담당자	회사명/성명 : 전화번호 :	회사명/성명 : 전화번호 :	개통희망일 : 20 . . .	
3	상호			희망회선번호 :
	주소			규격(속도) : bps
				장비임대 : 상위국(), 하위국()
유지보수담당자	회사명/성명 : 전화번호 :	회사명/성명 : 전화번호 :	개통희망일 : 20 . . .	

포지	전용회선 번호	(서비스 번호:)
	변경 항목	○계약기간 ○상품변경 ○설치주소 ○기타 ()
	현재	
	변경	
	사유	

본인은 신청서에 기재된 각종 KT 서비스 및 약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일 20

시청이

서명(인)

※ 본 신청서는 KT의 업무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KT의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임의로 수정 변경할 수 없습니다. Copyrights © KT Corp. All Rights Reserved.

CCTV전용회선 / 국내전용회선 이용약관 주요내용 요약

제1장 총칙

제1조(약관의 적용)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biz전용회선(이하“전용회선”이라 합니다) 서비스 이용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이하“기본약관”이라 합니다)과 이 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전용설비: 이용계약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전기통신설비
2. 전용회선: 이용계약에 의하여 계약자가 이용하는 전기통신 회선
3. 수용구역: 동일 가입구역안에 2이상의 전화교환국이 있는 경우에 전화교환국별로 전용회선을 수용하는 구역을 지정한 지역
4. 분기: 전용회선의 중도에서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전용회선을 연결하여 단말기기를 설치하는 것
5. 가입자선로: 전화국의 주배선반으로 부터 계약자의 구내 입입단자까지를 연결하는 선로
6. 회선종단장치(DSU등): 회선과 단말기기 사이에 연결되어 신호의 변환, 회선과 단말 기기의 접속 또는 개방 등의 기능을 갖는 장치
7. 양자암호서비스: 데이터전송시 양자암호로 암호/복호화하는 서비스
양자역학이 적용된 양자암호통신서비스는 해킹시 인지하여 해킹이 불가함

제 2장 전용계약

제3절 개통 및 점검

제13조(전용회선의 개통)

- ① 케이티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지정한 개통예정일에 개통합니다. 이 경우 케이티는 개통예정일 전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단말기기 상호간 안정, 신뢰성 및 호환성을 확보합니다.
- ② 계약자와 협의가 곤란한 경우 케이티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청약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전용회선을 개통합니다.
- ③ 청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통예정일 5일전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케이티는 개통예정일 또는 청약서 접수후 30일 이내 개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개통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청약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제14조(전용회선의 운용점검)

케이티는 기본약관 제11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용회선 개통후에 다음사항을 운용 점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가 설치한 단말기기를 전기통신기자재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2.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지 여부
3. 다른 선로기기 등을 연결하여 당초 계약된 규격 이상으로 이용하는 지 여부

제 3장 서비스 제공과 이용

제15조(이용정지)

- ① 케이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회선 이용의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1. 요금납부책임자가 전용요금과 가산금 등의 이행최고를 받고 최초의 요금납입기일 익일로부터 1월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2. 케이티가 설치한 설비를 승인 없이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다른 설비 등에 부당하게 접속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비상사태에 처하여 그 설비의 보호에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 케이티는 전용의 정지기간중에 그 정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용의 정지를 해제합니다.

제16조(이용중지)

- ①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용설비를 다른 전기 통신업무 또는 중요한 통신업무에 이용할 필요가 있는 때, 전기통신설비의 장애 또는 통화폭주 등으로 통신의 소통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전용회선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양자암호서비스는 중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전용회선 이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지사유,기간, 대상지역, 대상설비 등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중지범위와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순위로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제 1순위
가.국가안보
나.군사 및 치안
다.민방위경보 전달
라.전파관리

2. 제 2순위
가.재해구호
나.전기통신, 항해안전, 기상, 소방, 전기, 가스, 수도, 수송 및 언론
다.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라.주한외국공관 및 국제연합기관의 업무

3. 제 3순위
가.자원관리대상업체 및 방위산업체의 업무
나.정부투자기관 및 의료기관의 업무

4. 제4순위: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전용

제17조(이용유지)

- ① 케이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용회선의 이용을 휴지합니다.
1. 시설 및 기술상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설비 청구에 응할 수 없을 때
2. 제1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그 전용회선을 타에 전용할 때
- ② 케이티는 제1항 각호의 유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전용회선을 부활합니다.

제5장 요금등

제1절 통칙

제23조(요금등의 종류)

- ① 계약자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케이티에 납입해야 할 요금 등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1. 회선전용료: 전용회선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2. 장비임대료: 케이티가 제공하는 종단장치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3. 분기료: 전용회선을 중도에서 분기하여 단말기기를 설치 이용하는 경우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요금
4. 장치비: 서비스의 신규청약, 설변, 규격변경 청구 등에 대한 설치 또는 이전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
5. 계약자 부담시설비: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자 부담 조건으로 승낙시 장치비 외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
6. 출동비: 회선 장애 등 고객요청으로 출동 시 출동비용

7. 양자암호서비스이용료: 양자암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요금
- ② 제3조 규정 및 위 제1항에 의한 요금 및 적용기준, 적용대상 등은 "별표"와 같습니다.

제24조(요금등 산정방법)

-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용자가 단기전용의 기간내에 그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단기전용 요금을 적용 산정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이 장기전용의 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액으로 합니다.
- ② 회선전용료는 종류 및 규격에 따라 시내 및 시외요금으로 구분하고 시내 수용구역의 및 시외요금은 거리단계별 요금으로 하며, 거리는 케이티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한 과금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전용회선을 중도에서 분기하여 이용하는 때에는 그 분기된 구간에 따라 전용회선료를 별도로 산정합니다.
- ④ 시간단위 전용요금 산정:삭제
- ⑤ 이용의 정지,휴지로 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요금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 ⑥ 일시이용중단회선은 일시이용중단기간중 회선전용료의 30%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25조(요금등의 계산구분)

전용회선서비스에 대한 요금등은 즉납, 일액, 월액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합니다.

1. 단기전용의 일액으로하는 요금등의 계산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하며, 서비스 제공의 개시 시각 또는 종료시각이 1일의 중도인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장기전용의 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액으로 합니다.
2. 장기전용의 월액으로 하는 요금등의 계산은 매월1일 부터 말일(이하 "요금월"이라 합니다)까지를 1월분의 요금 등으로 하되 서비스 제공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당해 요금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사용한 일수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서비스 개시일, 변경 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며, 종료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26조(요금등의 일할계산)

- ① 요금 등의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요금등의 월액을 그 요금월의 일수로 나눈액을 월액의 일할로 합니다.
- ② 계약자의 서비스에 관한 월정액 요금등이 요금월의 중도에 변동이 있는 때는 그 요금월의 그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월정액의 일할로써 산정합니다.

제 2절 요금등의 청구 및 납입

제27조(요금등의 납입기일)

- ① 전용회선이용과 관련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제23조 제1항의 요금등은 사용월의 말일 이내에 케이티가 별도로 납입 기일을 정하여 청구합니다.
- ② 요금납입일이 일정하지 않는 단기 및 계약자부담시설비 등에 대한 요금 등은 케이티가 별도로 납입기일을 정하여 청구합니다.

제28조(요금등의 납입처)

계약자는 납입청구서에 의한 요금등을 납입기일내에 케이티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29조 (요금등 납입의 특례)

요금등의 납입책임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기관 또는 케이티가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관 또는 주된 사업소, 사무소 등에서 일할하여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로 일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요금등 납입의 연대책임)

제7조의 공동사용 전용회선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등은 그 납입하여야 할 요금등에 대하여 각각 연대책임으로 합니다. 이경우에 요금청구는 요금납입책임자로 지정된 대표자에게 청구합니다.

제3절 면탈요금등의 징수

제31조(면탈요금등의 징수)

- ① 케이티가 면탈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1. 계약변경을 하지 않고 전용설비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때
2. 계약변경을 하지 않고 전용설비에 다른 선로기기 등을 연결하여 계약당시 규격이상으로 변조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때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탈요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기본약관 제41조 및 본 약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4절 요금등의 감면 및 반환

제32조(요금등의 감면)

- ① 국가비상사태시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그 설비가 멸실된 경우 단말기기 설치장소 변경에 따른 장치비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 ② 전용회선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군사,치안기관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과 국가지도 통신용 그리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자가통신망 일부를 케이티의 전기통신망에 통합하는 경우
에 그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전용회선
2. 체신사업 경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인명, 재산의 위협방지 또는 재해의 긴급구조구난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전시에 군 작전상 필요하여 지원,제공하는 경우
5. 정보통신의 이용촉진과 보급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6. 기타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의하여 요금등의 감면을 적용받는 구체적인 대상기관,적용방법 및 감면율은 "별표"와 같습니다.

제33조(미공사분의 계약자부담시설비의 반환)

케이티는 전용설비의 설치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전용계약의 해제 또는 전용설비의 설치장소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그 설치공사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계약자부담 시설비를 반환합니다.

제34조(요금등의 할인)

케이티는 "별표"의 구분에 의하여 전용요금을 할인 합니다.

제6장 손해배상

제35조(손해배상)

- ① 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계약자가 케이티에 통지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케이티가 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날로부터 2시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회선이용료의 최저 3배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와 협의하여 배상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월액 범위내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유가 불가항력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 전항의 배상방법은 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요금중에서 감액처리 합니다.
- ③ 계약기간별 서비스요금에 지정된 경우 계약기간 이내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며 위약금은 별표와 같습니다.
- ④ ③항의 계약기간 중 제15조(이용정지), 제16조(이용중지), 제17조(이용유지), 제19조(일시 이용중단)이 발생된 경우는 이용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제18조(계약의 변경)는 양사한 협의시 가합니다.

※ 요금표: 회선별, 장비임대료, 분기료,설비 등 상세요금은 홈페이지 안내사항 참고